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568

발의연월일: 2025. 4. 3.

발 의 자: 김소희 · 김예지 · 김상훈

김선교 • 최은석 • 유용원

인요한 • 박정훈 • 엄태영

최수진 • 이헌승 • 김성원

곽규택 • 박덕흠 • 백종헌

김미애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폐기물·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 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음.

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과 대료 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 임.

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 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68조제4항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어느 하나의 처분권자가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 다른 처분권자는 동일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68조(과태료) ① ~ ③ (생	제68조(과태료) ① ~ ③ (현행과		
략)	같음)		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	4		
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			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			
로 환경부장관 ・시・도지사			
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부			
과·징수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	<u>다만, 지정폐기물과 지정</u>		
	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		
	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		
	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위반행		
	위에 대해 어느 하나의 처분권		
	자가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		
	다른 처분권자는 동일한 위반		
	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		
	<u>을 할 수 없다.</u>		